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감사결과보고서(안)

의안 번호	240
----------	-----

제출년월일 : 2001. 12. 7.  
제 출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 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대상기간 : 2000. 7. 1 ~ 2001.11.30

3. 감사실시기간 : 2001.12. 1(토) ~ 2001.12. 7(금) 7일간

### 4.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 감 사 대 상 : 의회사무국
- 감사 위원장 : 최정규 운영위원장
- 감 사 위 원 : 김열호 의원, 김옥자 의원, 김창기 의원, 권금택 의원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 ○ 동사무소 감사반 구성

감사반	감사대상동	인원	감사위원	감사보조자
제1반	서초1동, 서초2동, 서초4동	3인	정웅섭, 천승수, 장영화	홍승찬
제2반	서초3동, 방배1동, 방배3동	2인	허명화, 장경주	민기홍
제3반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2인	김열호, 권금택	김종열
제4반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2인	김용재, 정길자	김상남
제5반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4동	2인	김옥자, 박찬선	이순식
제6반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2인	이호혁, 최정규	김복종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없음.

## 5. 감사장소

- 위원회식 감사(의회사무국) — 제1위원회 회의실
- 동사무소 (18개동) — 동장실 또는 회의실

## 6. 감사 착안사항

-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 조직운영의 합리성
-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 사업의 타당성
- 경상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 기타 제반사항

## 7. 감사결과 처리의견

〔공 통〕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의회사무국	건 의	<p><b>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장비 확보.</b></p> <p>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함 현장을 생생하게 녹화할 수 있는 녹화장비, 각종 공사 현장 활동시 요구되는 마이크로메타기, 세멘트 강도측정기, 대형줄자, 생활정보지 등 많은 장비를 확보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p><b>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철저</b></p> <p>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상임위원회활동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	<p><b>본 회의장 대형스크린 설치 요망.</b></p> <p>본 회의장에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의정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민불편요소를 해소하고 잘못된 현장을 보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하고 의정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p><b>신년인사회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b></p> <p>매년 신년인사회를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별도로 신년 인사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입장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듦.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준비한 신년인사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신년 인사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p><b>의회사무국 직원 사기 진작 강구</b></p> <p>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집행부의 직원들에 비하여 저하된 분위기를 발견하였음. 사무국장은 직원의 진급, 보직관리가 타부서에 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살펴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의안 번호	241
----------	-----

제출년월일 : 2001. 12. 7.  
제 출 자 :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총무재무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 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대상기간 : 2000. 7. 1 ~ 2001.11.30

3. 감사실시기간 : 2001.12. 1(토) ~ 2001.12. 7 (금) 7일간

### 4.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 감 사 대 상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동사무소
- 감사 위원장 : 허명화 총무재무위원장
- 감 사 위 원 : 정길자 의원, 최정규 의원, 권금택 의원, 김옥자 의원  
김진영 의원, 정웅섭 의원,

## ○ 동사무소 감사반 구성

감사반	감사대상동		감사위원	감사보조자
제1반	서초1동, 서초2동, 서초4동	3인	정용섭, 천승수, 장영화	홍승찬
제2반	서초3동, 방배1동, 방배3동	2인	허명화, 장경주	민기홍
제3반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2인	김열호, 권금택	김종열
제4반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2인	김용재, 정길지	김상남
제5반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4동	2인	김옥자, 박찬선	이순식
제6반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2인	이호혁, 최정규	김복종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없음.

## 5. 감사장소

- 위원회직 감사(의회사무국) — 제1위원회 회의실
- 동사무소 (18개동) — 동장실 또는 회의실

## 6. 감사 착안사항

-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 조직운영의 합리성
-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 사업의 타당성
- 경상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 기타 제반사항

## 7. 감사결과 처리의견

[ 총 괄 ]

구 분		계	시정 또는 개선요구	건의	처리요구	기 타
국 별	합 계	74	57	12	5	
	감사담당관	1		1		
행정 관리국	계	37	30	5	2	
	공 통	2	2			
	총무과	11	8	2	1	
	자치행정과	16	13	2	1	
	문화공보과	8	7	1		
	민원어권과					
기획 재정국	계	18	14	3	1	
	기획예산과	9	8	1		
	세무과	4	1	2	1	
	세무1과	2	2			
	세무2과	3	3			
생활 복지국	계	18	13	3	2	
	공 통	1	1			
	청소행정과	10	6	3	1	
	사회복지과	2	2			
	가정복지과	3	2		1	
	위생과	2	2			
	산입환경과					

## [ 감사담당관 ]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지적사항)
감사담당관	건의	<p><b>o 공공시설 공사에 대한 감사 철저</b></p> <p>매년 복지시설, 동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시 건축비 평당 단가는 일반적 수준보다 건축비가 높은 이유를 감사를 통하여 사실규명 하여 주시고, 건축비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 이상 높은데 비하여 시공 후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2년 세출예산에도 보면 공공건축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감사실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확인과 사실 조사하여 재발을 불식시킴으로 건전한 행정재산의 보존과 불필요한(보수, 보강)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 행정관리국 ]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행정관리국 공통사항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예산편성 사업취소 변경 등 시행적오 예방</b></p> <p>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행정관리국 공통사항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사업취소 보류로 인한 과다불용 방지.</b></p> <p>중·단기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심사 분석하여 세출예산의 불용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과정에서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업계획에 신중한 검토가 사료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부서별 정원 책정 및 합리적 배치</b></p> <p>행정관리국 내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민원여권과의 3개 과가 정원대비 현재원이 총무과는 5명, 자치행정과는 3명,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2명이 초과되는 바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의 민원수요가 많아서 정원 초과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이겠으나 자치행정과는 최근에 신설된 조직임에도 정원 예측을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동원을 위해 현재원을 늘려 놓은 것인지 문제가 있으므로 정원관리를 제대로 하기 바람. 특히, 자치행정과는 정원 18명 대비 3명이 증가된 것은 부러 17%가 초과되는 바 대부분의 과 조직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정원 초과되는 것임. 각부서별 행정에 있어 아직도 주민을 서초구의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고 직원 각 개인이 서초구청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과도한 홍보를 지양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곳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민간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기준 준수</b></p> <p>금년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 지급실태를 보면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및 재향군인회에 각각 3천 만원, 1천 만원 및 5백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의 집행 상황을 보면 민주평통에 2천2백5십 만원, 자유총연맹에 8백 만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는 6백 만원을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지출하였는 바 다른 사업성 예산과는 달리 이러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공무원 책임의식 강구 인력관리 철저</b></p> <p>각 부서별 행정에 있어 아직도 주민을 서초구의 주인으로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고 직원 각 개인이 서초구청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곳에 적정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총 무 과	건의 의	<p><b>o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은행 대출이자 부담금 경감 방안 강구</b></p> <p>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대부를 지원하여 줌에 따라 직원 338명에 대해서 203억원 상당 규모의 대부금을 주선해 주고 있는 바, 이를 분석해 보면 1인당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이자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시정사항)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합리적 예산편성 및 업무과다부서 개편검토</b></p> <p>가정복지과는 사업예산이 많아 계속 불용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바,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을 계속발생 시킬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 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1.2과로 분할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원활한 지원 촉구</b></p> <p>부서별 직원 동호인클럽지원 등 예산편성기본 지침에도 경비성 성격의 예산임을 인식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그 기본지침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지원하여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어 사기진작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줄 것을 시정하여 주길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의회 제출, 각종자료, 업무보고 철저</b></p> <p>구의회 임시회·정례회 보고되는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시 주무과장 책임하에 정확하게 작성 보고, 제출토록 해야할 것이며, 업무보고와 자료가 서로 상이하고 현장 사실과도 상이한 사례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확한 행정자료 작성 제출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총 무 과	처리요구	<p><b>o 구와 동의 합리적 인사관리 철저</b></p> <p>1,270명의 직원들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구와 동(장기근속) 적절한 순환 보직으로 직급 승진 등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특히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유념하여 공평한 인사관리를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총 무 과	시정 개선요구	<p><b>o 청사주변 분뇨냄새 제거</b></p> <p>민원여권과 후면 공간과 구청에서 지하철 입구사이 맨홀 부근에서 분뇨냄새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인을 찾아 제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제 리 의 건 (지적사항)
총 무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서초구청사 음식물 냄새 제거 방안강구</b></p> <p>서초구청사지하구내식당에서 조리되는 음식물냄새가 1,2층 청사내로 발산되고 있는 바, 별도의 구조물등을 설치하여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총 무 과	개선요구	<p><b>o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업무를 사회과로 업무분장 이관하는 개선안 검토요망.</b></p> <p>가정복지과는 소관업무가 현실적으로 과다하므로 이로인한 업무추진 성과에도 부진한 실정이 발생하는 등 타구 사례도 참고하여 사회과로 업무분장 이관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각급학교 보조금 지원기준 제정 및 지원 철저</b></p> <p>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금년도 예산에 7억 원을 책정해 놓은 바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 자금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억1천여 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급 학교 46개교 중 33개 학교에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원칙, 지급절차, 지급후 사후관리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추가 집행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자치행정과 각 동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반상회 개최방안 강구</b></p> <p>동행정에 있어 각 동의 직원이 감소되어 제한된 직원으로 나름 데로 각 동별 차별화사업을 전개하고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짐. 그러나 우리구가 통장시스템을 바꾼 후 반상회 개최가 저조 하다고 분석됨. 반상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상회 개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매월 통장 회의시 반상회가 정착될 때까지 개최현황을 확인해, 복지 함</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 시정.</b>  현재 서초구 18개동 일부 동 경계가 불합리하므로 동인구·행정서비스 환경여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둔 경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균형적 행정서비스 관리가 불합리하고,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편의를 위해 동 경계 조정을 적극 추진 검토 후 시정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동사무소 직원 사기 진작</b>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감소되었으나, 업무량은 그대로이고, 구청 직원에 비해 7급에서 6급 승진시 동사무소 직원이 순위가 밀리는 등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동에서 5년이상 근무자를 구청 근무자와 순환보직 시킬 용의는 없는지와 현재 동 직원의 정원이 적정한 것인지?</li> <li>-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줄일 방법은 없는지?</li> </ul> <p style="text-align: right;">〈 김창기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위원구성 지연 이유</b>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동사무소 개보수 등으로 동 실정에 맞게 자치센터를 만들어 P.C 교육, 독서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바, 해당교 육생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고 운영실적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함에도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p> <p style="text-align: right;">〈 권금택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사적사항)
자치행정과	건의,시정	<p><b>o 통·반장에게 지급한 방독면 관리방법 검토</b></p> <p>통·반장 5,820명에게 화재검용 방독면을 1차로 2001. 10. 29경에 지급하면서 통장은 정확하게 지급되었으나, 변동이 많은 반장에게는 어떻게 지급되었으며, 또한 반장 교체시 어떻게 회수하고, 재지급하는지?</p> <p>그리고 이미 반장에게 지급한 방독면을 해당 통장이 관리보관 하는 방법은 어떤지?</p> <p style="text-align: right;">〈 김창기 위원 〉</p>
자치행정과 각 동	건의 의	<p><b>o 민방위 통대장 공석과다로 민방위대원 관리 부실</b></p> <p>현재 18개동의 민방위통대장 보직 정원은 749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위촉된자는 696명으로 43명의 통대장이 미복직된 실정임.</p> <p>각 동장은 공석중인 민방위통대장을 우수자원으로 조속히 위촉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와 제27조 지침규정대로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각종재해(폭우 및 폭설)시 통민방위대장 역할 수행 대책 강구</b></p> <p>현재 각동 통장이 자원봉사제로 운영됨에 따라 폭설 및 폭우에 대비한 통민방위대장의 역할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향후 각종재해시 신속하고 원활한 역할수행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부여 등 철저한 대책 및 개선을 요구함.</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 건 (지적사항)
자치행정과 각 동	건의	<p>각동 민방위통대장 위촉행정절차 미준수로 법정사무 불이행시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벌칙규정 적용관련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통·리·민방위대장은 통·리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p> <p>기본법 제17조 ①항에서는 민방위대원은 20세~45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한자로 규정하였고 동조 ②항에서는 ①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남자 및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구관하 18개동에서는 민방위통대장으로 위촉된 696명중 600여명이 여자와 45세이상자로서 지원절차를 밟아 위촉하여야 하는데, 제반행정절차를 이행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장위촉이 자원봉사자로 됨으로 하여 자동적으로 통대장도 자원봉사가 위촉됨으로서 법정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통대장이 과오를 범했을시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벌칙규정에 의거 의법처리하여야 하는데 매우 어려울 것임. 조속히 민방위통대장의 위촉절차를 준수하여 위촉함으로써 법적하자가 없도록 시정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자치행정과	처리요구	<p><b>o 동청사 누수방지공사 시행절차</b></p> <p>2000년도에 서초4동 청사 누수방지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누수가 되고 있는데 하자보수공사가 기간이 얼마나 되며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철저한 대책을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각동별 민원대 담당실명 명패제 실시(여부)요망.</b></p> <p>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살시에 따른 질높은 행정 서비스 수준향상의 일환으로 각동별 민원대 위 담당자 실명명패제 실시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친절행정. 책임 행정으로 신뢰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망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지적사항)																																								
자치행정과 각 동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통구분을 동별형평에 맞게 구분 요.</b></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동 별</th> <th>인 원</th> <th>통 수</th> <th>통장1인당인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서초1동</td> <td>16,000명</td> <td>37</td> <td>433명</td> </tr> <tr> <td>2</td> <td>서초2동</td> <td>20,400명</td> <td>49</td> <td>417명</td> </tr> <tr> <td>3</td> <td>서초4동</td> <td>24,000명</td> <td>67</td> <td>359명</td> </tr> </tbody> </table> <p>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가 동별형평에 맞지 않음.                      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를 8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향후 민방위 수당을 지급할 시 동별 통 구분을 각 동별 형평에 맞게 조정요망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조정안 검토</b></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동 별</th> <th>인 원</th> <th>통 수</th> <th>통장1인당인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서초1동</td> <td>16,000명</td> <td>20~22</td> <td>800여명</td> </tr> <tr> <td>2</td> <td>서초2동</td> <td>20,400명</td> <td>25~27</td> <td></td> </tr> <tr> <td>3</td> <td>서초4동</td> <td>24,000명</td> <td>30~33</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37	433명	2	서초2동	20,400명	49	417명	3	서초4동	24,000명	67	359명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20~22	800여명	2	서초2동	20,400명	25~27		3	서초4동	24,000명	30~33	"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37	433명																																						
2	서초2동	20,400명	49	417명																																						
3	서초4동	24,000명	67	359명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20~22	800여명																																						
2	서초2동	20,400명	25~27																																							
3	서초4동	24,000명	30~33	"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반사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b></p> <p>각 동·통(751통)·반(5,172반)별 반사회 운영실적이 점차 부진한 사례로 인해 구정·동정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웃 간의 장담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져 가는 실정인 바 관련규정에 의한 반사회 운영활성화 촉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민간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기준 준수</b></p> <p>금년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 지급실태를 보면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및 재향군인회에 각각 3천 만원, 1천 만원 및 5백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의 집행 상황을 보면 민주평통에 2천2백5십 만원, 자유총연맹에 8백 만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는 6백 만원을 집행하여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 지출하였는 바 다른 사업성 예산과는 달리 이러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구와 동에 신속한 업무연락 체제 강구</b></p> <p>구 행정은 일선동의 민원 수요충족을 위한 수단적 선결기구로서 각종 발생하는(도로·하수·공원·토목 등) 복지시설공사 시행 시에나, 또는 각 동에서 사전업무 숙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동에 행정 통보되는 행정구조적 통합기능이 이뤄져야 하고, 공사에는 현장확인 감독으로 위험시설물 발생에는 사전조치로 일선 동에서 사후보다 사전 행정조치로 효율적 행정체제 전환개선 조치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육자 위원 〉</p>
자치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각 과 업무미숙 발생의 최소화 철저</b></p> <p>2001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동 행정업무 중 주민등록 분실·재발급 업무수행에서 수수료 미징수한(14건 140,000)사례, 노인교통수당, 미지급 대상자에게 착오 지급한 발생사실 등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향후 이러한 행정 과오에는 그 책임을 강하게 행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업무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육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과중한 홍보성 예산 지향</b></p> <p>홍보성예산의 편중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다한 홍보를 지양하고 구민을 위한 사업에 주력 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서초조형예술원 운영활성화 방안강구</b></p> <p>서초조형예술원의 위탁관리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구청에서 직영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에도 4억 9백만원을 편성으로 운영개선을 위해 독서실 운영 등 활성화 계획이 있으나, 이것은 예산낭비일 뿐이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성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김창기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서초구 소식지 배부 철저</b></p> <p>매월 140,000부씩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가 직접 주민들에게 얼마나 배부되는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됨. 서초구소식지는 행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는 공보성이 있기에 서초구소식지의 대주민 전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징수 철저</b></p> <p>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체납액이 2001년 9월 30일 현재 징수결정 액 46,425천원 중 35,875천원을 수납하고 10,550천원은 체납되 어 징수율 77.28% 실적은 세목 성격상 이해가 어렵고 법적근거 미련 등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서초구소식지 의회소식 지면 개선요구</b></p> <p>매월 발간되는 서초구 소식지에 의회소식지면이 있으나 2면에 게재하지 아니하고 계속 5면에 게재하고 있는 바, 이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면배정을 시정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문화공보과	건의	<p><b>o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구립도서관 또는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방안 검토</b></p> <p>내곡동 공동시설부락 운영을 그 동안 서울대학교에 위탁 관리해 오다가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는 바 그간 많은 논란이 되어 온 동 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또한 3,4층을 독서실로 개조한다고 하는 바 이미 서초구에는 많은 독서실이 설치되어 있어 독서실의 난립이 우려되므로 이곳을 차라리 구립도서관으로 변경하던지 종합스포츠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서초구소식지 개선요구</b></p> <p>구청에서 예산으로 발간하는 서초구소식지가 각 가구에 제대로 배부되지 아니하고 아파트입구 등에 쌓여 있는데 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이고 배부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문화공보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10억이상 투자사업 계획의 투융자 심사 확행 등 법령준수 철저</b></p> <p>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반포2동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서에 158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동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을 변경시켜 무위로 돌아간 사업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10억원 규모이상의 투자 사업은 투융자사업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진행시키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 기획재정국 ]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 및 예산편성 사업 취소 변경 등 시행착오 예방</p> <p>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사업취소 보류로 인한 과다불용 방지.</p> <p>중·단기 사업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심사 분석하여 세출예산의 불용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여 그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과정에서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사업계획에 신중한 검토가 소요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p> <p>정책의 결정은 신중성이 결여된채 사업이 계획되어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가 취소되고 변경되는 것은 매년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역시 매년 연동제라고 하나 연도별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단절되는 졸속 계획이라고 판단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중함이 결여된 것을 시정하여 사업의 시행착오의 연속에서 오는 인력, 예산낭비의 초래를 지양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가정복지과	처리요구	<p><b>o 경로당 화재예방대책 철저</b></p> <p>동절기를 맞이하여 동네어르신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순발력이나 기동력이 떨어지는 노인들께 평소에 화재예방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위 생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도로변등 영업장소확장 영업행위단속</b></p> <p>일부 위생업소등이 영업장소를 보도등 도로변까지 영업장소를 확장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위 생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직원들에게 업무교육 철저</b></p> <p>위생과 행정처분시 개정된 관련법규를 사전숙지를 못하여 종전 규정에 준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면허세 25건씩이나 과다부족한 사실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행정능력부재라는 질책을 면키 어렵고, 영세 업주들에게 설득할 수 없는 관행적 행태로 신뢰성에도 문제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업무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사회복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신규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등 법령이행 준수 촉구</b></p> <p>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겠다고 서초동 383의 17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40여 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4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받지 않은 점과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가정복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여성조직 지원예산 운용의 합리적 집행 철저</b></p> <p>구 여성조직 운영관리에 있어 금년도 예산 집행한 현황을 살펴 보면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운영비, 새마을 부녀 회원 간담회 운영비, 직원부인 자원봉사자 간담회 운영비 등으로 전체예산 2백7십 만원의 대부분인 2백1십8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러한 내용들은 여성조직을 육성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향후 우리 구의 많은 여성조직을 지원하는데 동 예산을 중점적으로 집행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가정복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합리적 예산편성 및 업무과다부서 개편검토</b></p> <p>가정복지과는 사업예산이 많아 계속 불용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을 계속발생 시킬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 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1.2과로 분할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음식물쓰레기처리 고속발효기용기설물 철거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b></p> <p>아파트주변 시설녹지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고속발효기 및 고속발효기보호용가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발효기의 고장 및 사용중지로 인한 발효기 및 가설물 철거한 녹지대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음식물 잔반처리 수거용기 관리 철저</b></p> <p>현재 음식물 수거용기 3,600개를 18개 각동에 배부한 현황을 동별 현실적 필요량과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이상의 보유로 인한 예산낭비 및 관리에 문제가 되므로 음식물 수거의 효율적 관리 목적에 근접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음식물 배출전용 비닐봉투사용 배출에서 음식물 용기에 직접 수거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획기적 쓰레기 환경개선에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도록 신지식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사회복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공정성 확보 철저</b></p> <p>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청탁과 인정에 치우쳐서는 안됨. 물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있어 법적인 조건을 대상자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여 선정되는 사례가 왕왕 많으니 각별히 참고하여 엄격한 사전조사로 선정하기 바라며, 현재 선정되어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도 재심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건축폐기물 집하장 민원예방 및 장소이전 검토 요구</b></p> <p>건축폐기물 중간집하장 사용 연장 허가에 따른 양재지동 차화원, 신망애의 집, 인근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동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향후 동 중간집하장이 너무 주민생활권과 인접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다른 한적한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폐기물집하장 민원대책수립 철저</b></p> <p>신망애 집 아래 건축물폐기물집하장이 위치하고 있는 바, 폐기물운반시 도로변미관 및 주변먼지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많은 양이 적치되고 있어 민원 억제부도시 폐기물처리 문제등이 있으므로 장소이전 등 대책이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청소행정과	건의	<p><b>o 효율성이 저하된 고속발효기의 폐기 등 예산낭비 요인제거</b></p> <p>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71대 중 가동되고 있는 것이 36대이며 절반에 가까운 35대가 가동이 중지된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도입은 실패한 정책이 분명함. 또한 동 기계들의 이설비용으로 매년 예산을 행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가 심하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내용연한이 200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하는 기계들을 이설시킨다고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계들은 과감히 폐기 처분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지적사항)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청소 종합시설의 차량정비 시설물 전면 재조정 촉구</b></p> <p>원지동 청소종합시설에서 차량 종합정비 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까지도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실제로 이곳에서 정비하는 차량의 추이를 살펴 보면 청소행정과 소속 차량이 39대, 기타 차량이 73대로 청소행정과 관련된 차량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반 차량의 정비 비율이 높으므로 청소종합시설의 시설물 설치를 전면 재조정하여 차량 정비하는 장소를 다른 적당한 곳으로 이전시킬 것을 촉구함.</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청소행정과	건의	<p><b>o 음식물쓰레기 처리 근본대책 마련</b></p> <p>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청소행정과	처리요구	<p><b>o 재활용 관리기금의 효율적 집행 촉구</b></p> <p>재활용품관리기금의 적립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3억원, 2002년도에 3억원이 추가 조성되어 총 16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에 동 기금의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재활용 센타 시설비로 9천여만원과 리사이클 경진대회 등에 집행하였는 바 동 기금을 적립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 생활복지국 ]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생활복지국 공동사항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예산편성 사업 취소 변경 등 시행적외 예방</b></p> <p>투자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허명화 위원 〉</p>
청소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음식물 처리 고속발효기의 운영실태 및 향후 처리계획 수립 촉구</b></p> <p>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 처리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만, 애당초 설치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음식물처리 고속발효기 운영실태와 폐기처리된 기기는 몇대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계속해서 고속발효기 의존할 것인지?</li> <li>·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은?</li> </ul> <p style="text-align: right;">〈 권금택 위원 〉</p>
청소행정과	건의	<p><b>o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확대설치</b></p> <p>쓰레기무단투기 예방대책 일환으로 감시용 카메라 2대 설치로 예방효과를 거양하겠다고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대의 설치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단투기가 조기에 단절하기 위해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감시용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것을 건의함.</p> <p style="text-align: right;">〈 권금택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재무과 도시정비과	건의의	<p><b>o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사업의 연계 법적인 절차 준수에 의한 예산집행</b></p> <p>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도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서울시와 연계되는 사업에서 사전협의 없이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고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세무1·2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자치구세 세목교환 문제 대책 강조</b></p> <p>최근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간의 세목교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약 108억 원의 세입결손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구 재정운영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세입 징수 차질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세무1·2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지방세의 악성 체납방지 대책 철저</b></p> <p>우리구 관내 일부 호텔에서 구세가 악성자치 체납으로 미징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구세체납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세무2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지방세 미수납분 시효소멸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b></p> <p>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2000년 12,497건 615,929천원 시효결손이 발생되었고, 2001년 11월 20일 현재 7,415건에 410,706천원 시효결손된 사항은 체납징수독려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책임있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재 무 과	건 의	<p><b>○ 사유재산 매매계약 성립방안 모색</b></p> <p>서초구 지역여건에 따라 주차장, 복지시설, 동청사유처 등 수요요건이 발생되지만 국유지 신채비지, 구유지가 없는 지역, 사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나, 현행법상 행정요건은 감정가액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현실적인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적극 요망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건의 및 그 대책이 요구되므로 대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재 무 과	시정개선	<p><b>○ 경부고속도로 체비지 재산세 미환급 세대 환급절차</b></p> <p>1994년도에 서울시에 매각한 경부 고속도로 체비지로 인하여 재산세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거 5년 동안이나 부과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환급절차를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도 환급받지 못한 세대가 있는 바 면밀히 조사하여 한 세대도 누락되지 않도록 환급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재 무 과	처리요구	<p><b>○ 구유재산 소유권이전 관리 철저</b></p> <p>구유재산조서에 2001년도만 구유재산 추정토지분 2,094필지중 서초구 청사 토지분에 대하여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로 현재까지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므로 인한 불이익, 재산권의 분쟁소지도 우려되는 바, 서울시와 행정적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하여 서초구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감하도록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행정소송 대응에 대한 철저</b></p> <p>매년 행정소송건이 증가(2001년 전년대비 33건)되고 있는 실정에 소송발생율이 최소화되는 행정의 정책방향 개선과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송무담당 직원의 전문성, 잦은 인사를 최대한 재고하고 고문변호사와 상담후 승소하여 승소율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지시사항 전달 개선</b></p> <p>구청 확대간부회의시 지시사항중 xxx 조례가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란 지시사항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지시사항이라 사료됨.</p> <p>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의사결정을 존경해야 하는 행정부의 수반은 일제 치하에서의 식민지 통지개념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됩니다.</p> <p>앞으로 이런 지시사항을 내려서는 안되며, 지시를 받은 각 동장은 의원들에게 전달한다 하여도 참고할 의원은 없으니, 의원에게 전달하지도 말아주기 바라며, 지시사항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 사료됨.</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기획예산과	건의	<p><b>o 컴퓨터 기종별 관리철저</b></p> <p>정보화·인터넷 시대에 서초구 1,427대 총 보유대수가 있다고 했고, 전자결재를 위해서 팬티엄 2급 1,130대가 수요요구에 종에 따라 부족한 2급 기종은 더 구매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고, 기종에 따라 구형이 된 즉 486기종은 최대한 업그레이드하여 활용하는 경제적 물품관리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및 총괄적인 분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시책 업무 추진비의 효율적 운용실시.</b></p> <p>각과 시책업무 추진비의 예산편성대비 집행율은 낮으나 효율적 운용이 되지않고, 매년 편성기준에 준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합리적 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한 계획과 편성이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활동이 부진한 각종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촉구</b></p> <p>지난번 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니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의 단 1건만 정비하여 정비실적이 대단히 미흡하므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동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획재정국에서 출선, 개최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정길자 위원 〉</p>
기획예산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합리적 예산편성 및 업무과다부서 개편검토</b></p> <p>가정복지과는 사업예산이 많아 계속 불용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무계획한 예산편성으로 과도한 불용액을 계속발생 시킬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시 철저한 검토 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1.2과로 분할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의안 번호	242
----------	-----

제출년월일 : 2001. 12. 7.  
제 출 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서초구가 집행한 행정사무가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당하게 추진 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

###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입법·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대상기간 : 2000. 7. 1 ~ 2001. 11. 30

3. 감사실시기간 : 2001. 12. 1(토) ~ 2001. 12. 7 (금) 7일간

### 4.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 감 사 대 상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동사무소
- 감사 위원장 : 이호혁 도시건설위원장
- 감 사 위 원 : 장경주 의원, 김열호 의원, 박찬선 의원, 장영화 의원, 박홍달 의원, 천승수 의원, 김창기 의원, 김용재 의원.

## ○ 동사무소 감사반 구성

감사반	감사대상동	인원	감사위원	감사보조자
제1반	서초1동, 서초2동, 서초4동	3인	정웅섭, 천승수, 장영화	홍승찬
제2반	서초3동, 방배1동, 방배3동	2인	허명화, 장경주	민기홍
제3반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2인	김열호, 권금택	김종열
제4반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2인	김용재, 정길자	김상남
제5반	방배본동, 방배2동, 방배4동	2인	김옥자, 박찬선	이순식
제6반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2인	이호혁, 최정규	김복종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없음

## 5. 감사장소

- 위원회식 감사(의회사무국) — 제2위원회 회의실
- 동사무소 (18개동) — 동장실 또는 회의실

## 6. 감사 착안사항

-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 조직운영의 합리성
-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 사업의 타당성
- 경상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 기타 제반사항

## 7. 감사결과 처리의견

[ 총 괄 ]

국 별	구 분	계	시정 또는 개선요구	건 의	처리요구	기 타
합 계		78	55	23		
공 통 사 항		3	2	1		
도 시 관리국	계	34	24	10		
	도시정비과	16	10	6		
	지 적 과	1		1		
	건 축 과	4	4			
	공원녹지과	13	10	3		
건 설 교통국	계	37	29	8		
	건설관리과	4	2	2		
	토 목 과	5	4			
	치수방재과	7	5	2		
	교통행정과	7	6	1		
	주차관리과	14	11	3		
보건소	계	4		4		
	보건행정과	1		1		
	보건지도과	1		1		
	의 약 과	2		2		

[ 공 통 ]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자치행정과 각 동	시정 및 개선요구	<p>o 통구분을 동별형평에 맞게 구분 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동 별</th> <th>인 원</th> <th>통 수</th> <th>통장1인당인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서초1동</td> <td>16,000명</td> <td>37</td> <td>433명</td> </tr> <tr> <td>2</td> <td>서초2동</td> <td>20,400명</td> <td>49</td> <td>417명</td> </tr> <tr> <td>3</td> <td>서초4동</td> <td>24,000명</td> <td>67</td> <td>359명</td> </tr> </tbody> </table> <p>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가 동별형평에 맞지 않음.                      통장 및 민방위대장의 1인당 수용인구를 8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향후 민방위 수당을 지급할 시 동별 통 구분을 각 동별 형평에 맞게 조정요망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조정안 검토</b></p> <table border="1"> <thead> <tr> <th>NO</th> <th>동 별</th> <th>인 원</th> <th>통 수</th> <th>통장1인당인구</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서초1동</td> <td>16,000명</td> <td>20~22</td> <td>800여명</td> </tr> <tr> <td>2</td> <td>서초2동</td> <td>20,400명</td> <td>25~27</td> <td>"</td> </tr> <tr> <td>3</td> <td>서초4동</td> <td>24,000명</td> <td>30~33</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37	433명	2	서초2동	20,400명	49	417명	3	서초4동	24,000명	67	359명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20~22	800여명	2	서초2동	20,400명	25~27	"	3	서초4동	24,000명	30~33	"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37	433명																																						
2	서초2동	20,400명	49	417명																																						
3	서초4동	24,000명	67	359명																																						
NO	동 별	인 원	통 수	통장1인당인구																																						
1	서초1동	16,000명	20~22	800여명																																						
2	서초2동	20,400명	25~27	"																																						
3	서초4동	24,000명	30~33	"																																						
재 무 과 도시정비과	건 의	<p>o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사업의 연계 법적인 절차 준수에 의한 예산집행</p> <p>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도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서울시와 연계되는 사업에서 사전협의 없이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고 변경할 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해 당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u>각종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u></p> <p>각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에 비해 징수건수가 대부분 5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특히 과년도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금액은 1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p> <p>적발하여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한 것이며, 채납결손 건수가 많은 것은 법 집행에(종이 한 장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되는 바,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 도시관리국 ]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도시정비과	건 의	<p><b>o 도시정비과 계획완료 후 예산편성</b></p> <p>도시정비과 각종 사업들이 매년초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12월까지 실시계획까지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후 예산편성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박흥달 위원 〉</p>
"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체비지 관리방안</b></p> <p>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은 체비지 중에서 주거지역 작은 필지는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체비지 매각처리계획 수립할 용의는, 체비지 점용료 부과 건수 추후 발견시 변상금 조치는?</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강남대로상 도시계획사업 적극추진</b></p> <p>강남대로상 도시계획결정 사업의 추진이 보류됨. 서초구의 상업지구 비율일 낮고, 특히 강남 중심대로상 상업지역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 요청하여 빠른시일내 상세계획 확정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방배로입구 전광판 이전요.</b></p> <p>방배로 입구 설치된 대형 전광판 설치 이전요청을 2000년 행정감사시 답변에 이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전이 안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 박흥달 위원 〉</p>
"	건 의	<p><b>o 집단무허가 건물철거와 사후대책 철저</b></p> <p>집단 무허가촌은 겨울철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점검후 화재발생 예방차원에서 직접 전기안전점검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	건 의	<p><b>o 조속한 시행규칙 제정</b></p> <p>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제정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도시정비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유희지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할 것.</b>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 많은 유희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를 적절히 활용토록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있도록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도시정비과	건 의	<p><b>o 학교용지 이용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에 관하여</b> 학교용지이용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이 올 추경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느정도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무엇이고 또한 지하에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함으로 판단되니 적극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도시정비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학교용지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건립의 문제점.</b> 현재의 계획을 보면 양재권역, 서초권역, 잠원권역 3개지역으로 분류하여 308-06목으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분야에서 계획에 의거 이미 추진완료 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일치된 부분도 있는데, 중복성이 있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투자대 가치가 미흡하다고 봄. 특히 양재권역은 현재 내곡동에 위치한 조형예술원(종합공동부락시설)이 직영됨에 따라 많은 시설이 생기므로 더더욱 세밀한 시설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본 계획은 재검토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도시정비과	건 의	<p><b>o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관하여</b>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주로 세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세로형 보다 가로형이 내용 전달면과 공간을 활용하는데 용이하여 전달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선방안 강구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 건 (지적사항)
도시정비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공원용지 등기이전에 관하여</b></p> <p>공원용지중 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51필지를 서초구로 등기 이전사업은 중요한 시안이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기 바람.</p> <p>〈 장경주 위원 〉</p>
도시정비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방배동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할 것.</b></p> <p>방배동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화술용역비 5억원이 서울시 세분화 계획과 병행되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음.</p> <p>서울시 세분화 지침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구상한 방배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계획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강한 의지를 보이기 바람.</p> <p>〈 천승수 위원 〉</p>
도시정비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사회문제가 됨으로 사전단속과 관리 철저</b></p> <p>비닐하우스내 불법 무허가 건물과 2000년 이후 신발생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면 13개지역 257동 650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단속소홀과 근무태만, 주민등록 관리소홀등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철거도 못하고 암적인 문제로 계속 남아있어서 큰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바람.</p> <p>〈 장영화 위원 〉</p>
도시정비과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특별회계 사용상의 문제점</b></p> <p>주차장특별회계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p> <p>새우촌공원종합시설 건립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p> <p>노외주차장건립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 제4항에 주차장충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p> <p>새우촌공원종합시설은 대지 13,877㎡ 건축 총면적 4,900㎡로 주차장법에 위배되며, 부득히 특별회계를 새우촌 종합시설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현행규정을 개정후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임.</p> <p>〈 김열호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지 적 과	건 의	<p><b>o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b>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934개 업소중 76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적극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건 축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대성사 주변 녹지훼손 원상복구</b> 서초동 산141번지 4호 외 3 우면산 대성사 증축후 자연녹지를 무단 훼손하여 주차장을 건설한 사실은 불법이라고 판단되니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를 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장영화 위원 〉</p>
건 축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방배동 청권사 진입로 완벽 복구요.</b> 방배동 산43의 6호 (청권사) 붕괴 2000.12.29. 03:00경 복구를 위하여 절개를 하였으나, 아직도 자동차 진입로 및 나무식재가 부족함으로 진입로 등 원상복구등 완벽한 복구가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p>
건 축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조속 제정</b> 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함. (2000년도 감사시 제시한 내용)</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건 축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신축공사장 사후 관리 철저</b> 신축건축을 준공시 조경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과 준공후 사후관리 등 수시점검이 없어 훼손되어 주변환경이 불결함으로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서초구 관내어린이공원 실정에 맞는 계획세워 관리</b>                      서초구 어린이공원 88개소 사전계획이 없이 임기응변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 요망.                      &lt; 박홍달 위원 &gt;</p>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지역의 추후 대책 철저</b>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2개마을 염곡마을, 남태령 전원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인구 1000명이상 마을인 성·형촌마을이 우선해제지역에서 누락된 사유 및 추후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                      &lt; 김용재 위원 &gt;</p>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청계산 매봉등산로에 양방향 교행토록 개선</b>                      주말이나 주중에는 청계산 정상 9부능선 등산로로 길이 좁아 양방향 교행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교행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lt; 장경주 위원 &gt;</p>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양재천 화장실 설치 장소 변경에 대하여</b>                      2000 자치구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으로 양재천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를 사업변경하여 우면산에 설치하였는 바 이는 최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lt; 장영화 위원 &gt;</p>
공원녹지과	건의	<p><b>o 등산로 입구에 홍보물 게시대 설치 요망</b>                      청계산 원터골 등산로등 관내 등산로 입구에 산악회에서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게시하는 게시대 설치 요망.                      &lt; 장경주 위원 &gt;</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겨울철 등산객 안전을 위해 등산로 낙엽제거 요망</p> <p>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등산로 쌓인 낙엽 때문에 등산객들의 사고가 빈번한데 산불감시 공익 요원들을 동원하여 등산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여 등산객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청룡공원조성시 묘목수 부족분에 대한 조치와 하자 보수 철저</p> <p>청룡공원 조성 공사시 식재한 수목의 하자 (묘목 식재 부족분 포함)가 발생 시정을 요구 하였던 바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독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o 간선도로상 가로수 정비 철저</p> <p>관내 각 구간별 간선도로의 가로수 관리 소홀을 지적, 동별 실태조사하여 사고나 또는 고사로 배어낸 곳에 재보식하고, 현 가로수 증 상태 불량한(영양실조) 나누는 개량 또는 거름을 주어 건강한 나무, 아름다운 자태로 자랄 수 있는 관리가 요망되고, 특히 서초 구간별 특색 사업으로 관리되는 즉, 우면로는 칠엽수(마로니에) 서초로는 느티나무 거리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증장기계획 수립을 권고함.</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공원녹지과	건의	<p>o 양재시민의 숲 명칭개칭에 관하여</p> <p>양재시민의 숲에는 윤봉길 의사가기념관이 있는데 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윤봉길 의사가기념관이 우리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므로, 양재시민의 숲을 매한공원이라든지 윤봉길 공원으로 개칭하는 것이 마땅하니 추진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건의	<p>o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 요망</p> <p>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지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양재2동 뿐만이 아니라 전동이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이나 양재근린공원내 공영주차장을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사용함이 효율적이며, 공원내 주차장이라도 주차장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함이 마땅하니 재검토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공원녹지과 토 목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계획적인 학교지원사업지양.</b></p> <p>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예산편성 308-06 목의 보조금 지원내용의 각종사업을 해줌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사전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사업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p> <p>※ 308-06 목의 예산을 수립할 때 사전에 각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편성 지침대로 절차를 밟아 편성 지원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음식물쓰레기처리 고속발효기용시설물 철거 녹지대 유지관리 철저</b></p> <p>아파트주변 시설녹지대에 음식물쓰레기퍼리를 위한 고속발효기 및 고속2발효기보통가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발효기의 고장 및 사용중지로 인한 발효기 및 가설물 철거한 녹지대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등을 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최정규 위원 〉</p>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입산금지 기간에 대하여</b></p> <p>입산금지의 목적은 산불예방이 목적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여 입산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기상상태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산금지를시시키는 것이 타당하니 입산금지 현수막을 다시 바꾸어 국민의 겨울철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 건설교통국 ]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건설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기부채납된 토지 공부정리 철저</b></p> <p>반포4동 도로 4필지가 도로 기부채납되었는데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이전에 기부채납된 도로나 공원 등이 시소유로 등재하지 않아서 몇십년이 지난 현재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를 않고 있다는 것은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즉시 정리를 하기 바라고 공부정리를 전산화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건설관리과	건의	<p><b>o 도로점용의 민원처리의 문제점과 보·차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그 대책</b></p> <p>도로점용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유연성을 유지하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건축현장에 대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해 10월까지 1,000여건으로 너무 단속 위주인 것 같으므로, 단속을 완화할 방안을 연구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건설관리과	건의	<p><b>o 공공기관 도로복구비 체납액 징수 철저</b></p> <p>도로굴착허가는 도로복구비 납부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체납액이 크게 발생할 수 없음에도 2000년도 1억2천 9백만원이나 되었는데 이체납중에는 강남수도사업소 한전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체납액 징수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니 체납액 징수 철저를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건설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보도블럭 재활용 철저</b></p> <p>일부위행업소등이 영업장소를 보도등 도로변까지 영업장소를 확장하여 영업행위를 하여 도로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최정규 위원〉</p>
토 목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보도블럭 재활용 철저</b></p> <p>보도블럭 교체 후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을 재사용하여 구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박찬선 위원 〉</p>
토 목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화물터미널-원터마을구간 고속도로변 부채도로 개설공사 사업 진행중 중단되었으니,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용재 위원 〉</p>
토 목 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시민생활불편요소(골목길 소파, 보도블럭파손)</b></p> <p><b>발생시 조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강구.</b></p> <p>종전에는 골목길 소파·보도블럭 파손 등 소규모사업이 발생되었을시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각동에 소규모공사 보수비를 할당하여 동장책임하에 처리토록하였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어 구청기능과에서 직접 처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토 목 과 치수방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공사설계시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계획적 설계요.</b></p> <p>모든 공사시 상세한 설계가 되지 않아 예산낭비 및 효율성이 부족함로 좀 더 계획적이고 상세한 설계가 되도록 연구 검토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지적사항)
치수방재과	건의	<p><b>o 하수도 준설이 끝난 곳에 준설완료 홍보물 부착</b> 하수도 준설완료 후 공사를 완료했다는 홍보물을 부착함으로써 완벽한 준설공사와 열심히 일한 모습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 〈 박찬선 위원 〉</p>
치수방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이행</b> 양재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현재 3년동안 중단상태에서 강남구나 과천쪽 구간은 공사를 완료하여 양재천 살리기에 앞서고 있는 반면 서초구 구간은 사업이 부진함으로 예비비를 투입하여 서라도 양재천 정비공사를 마무리 할 것. 〈 김용재 위원 〉</p>
치수방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바람골~개나리골 소하천 정비를 철저히</b> 98년도 폭우시 원지동 바람골에서 소하천으로 우수가 밀려들어 지반이 내려가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 돌망태 등으로 쌓아서 복구하여 예산절감과 생태학적으로 자연생태가 많이 복원되었으나, 바람골에서 개나리골 소하천구간 정비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하기 바람. 〈 장경주 위원 〉</p>
치수방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저지대 침수지역 간이펌프장 조속히 착공할 것.</b> 교충 뒤 저지대 침수지역에 조속히 예산을 반영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를 착공하여 주시기 바람. 〈 김용재 위원 〉</p>
치수방재과	건의	<p><b>o 양재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마무리 철저</b> 양재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선하려는 바, 과천시와 강남구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할 것. 〈 김용재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치수방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각종 기금이나 사업시행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예산 집행</b></p> <p>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8조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 또는 변경토록되었으나 양재천 심의위원회에서 양재천 정비사업으로 심의·의결한 사항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변경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면동 식유촌 침수해소공사에 변경사용하였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편리한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요망.</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교통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감독 소홀자 문책</b></p> <p>방배동 중앙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시 설계 미숙 공사감독 소홀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어 감독 책임자를 법적 조치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p>
교통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마을버스 불법운행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b></p> <p>사평로를 다니는 마을버스가 이수고가도로가 완공되었는데도 반포전화국 앞에서 유턴하는 경우가 많아서 고가밑을 돌아 삼호아파트 앞에서 정차해 달라는 민원이 빈번하고 막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이 밤늦은 시간에 기다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영리를 생각하기 보다 주민을 위해 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박찬선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견 (지적사항)
교통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버스전용차로 표시선 설치불합리</b>  관내버스전용차선 설치가 합리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승용차들이 주행중 본의아니게 차선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대로에서 소로로 우회전하는 곳은 충분한 준비선을 두어야 우회전차량이 우회전하는데 차선위반을 하지 않게 됨.  또한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할시에도 대로의 중앙쪽으로 진로를 잡을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차선을 두어야 할 것인데, 바로 버스전용차선이 시작됨으로 하여 승용차의 차선위반사례가 발생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교통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내 공영주차장 해약으로 인한 세입손실의 보존 대책 철저</b>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공사를 9월부터 착공하였는데 공영주차장 임대계약을 1월에 계약, 2월에 해약하였으므로 적어도 6-7개월 세입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주차관리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협의기간을 고려하여 협의·조정을 했다면 손실금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봄.</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교통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노현로 능률차선제</b>  · 노현로 능률차로제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경주 위원 〉</p>
교통행정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없도록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b>  주차장특별회계불용액이 2000년도 262억 4천만원 2001년도 추정치 276억원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예 주차면수가 절대부족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도 공공용지 보상법에 얽매어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해 민원의 대 혼란이 예상됨.  주차관리과장은 과감하게 현시가 감정을 하여 주차장 회계가 불용되는 일이 없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교통행정과	건 의	<p><b>o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련법규 제정 강구</b></p> <p>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4m의 소방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절대 그어서는 안된다. 주차요금도 다양하고 주·야간 10일간, 15일간등 시간도 다양한데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혼선이나 시시로운 언쟁이 없도록 시행규칙등 서초구조례로 확실하게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박찬선 위원 〉</p>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제정</b></p> <p>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수립치 않아 원활한 행정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p> <p>o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시행함에는 제3조 세입란에 있어 위탁관리, 과징금, 보조금, 과태료 등 예산을 관리하는 시행상 필요한 행정절차 명시</p> <p>제5조의 일시차입, 임여금 처리를 위한 행정처리</p> <p>o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절차</li> <li>· 용자금 지급에 따른 각종서식 및 행정절차 등이 세부 시행 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방배로 정류장 단속 철저</b></p> <p>방배로 버스베이(정류장) 단속이 소홀하여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어 있으니, 철저한 단속이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박홍달 위원 〉</p>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주차장부지매입 절차에 대한 문제점.</b></p> <p>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입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주차장부지로 결정(도시정비과)의회결정된 후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로 인하여 도시계획 결정되기전에 개인재산권 행사로 타인과 매매체결로 인하여 토지주가 변경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음.</p> <p>또한 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됨.</p> <p>주차장부지를 매입시 특별회계로 매입절차에 따라 매입 구재산으로 정리한 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부지를 만든다음,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사용함이 바람직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 건 (지적사항)
주차관리과	건의의	<p><b>o 기계식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철저</b></p> <p>신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건물외벽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조례로도 제정했는데 제정한 이후 관리처분은 어떻게 하였나? 정기검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주차장특별회계 과오납 발생이 없도록 시정요.</b></p> <p>주차장특별회계 과오납 발생이 2000년도 총 348건 2001.10까지 총 520건 매년 증가하고 있음.</p> <p>과오납으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이 시료되는 바, 부과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76.5%이르고 있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에 철저</b></p> <p>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200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23.5%이고 76.5%가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주차 시정을 들어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주차장부지를 매입 하는데 동별현황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목일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옥외광고물 체납결손 처분없게 만전을 기하기 바람.</b></p> <p>옥내외 광고물 과징금 부과는 적발하여 부과에서 징수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체납되어도 즉시 부과를 하지 못해 업무가 바뀌면 체납되는 사례가 많아 체납 결손하게됨. 부과하여 징수가 안되면 즉시 재부과하여 징수건수 보다 체납결손 건수가 많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과징수 요망됨.</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자적사항)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이 76.5%이르고 있어 정확한 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에 철저</b></p> <p>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2000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23.5%이고 76.5%가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주차 시정을 들어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주차장부지를 매입 하는데 동별현황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민원폭주하지 않도록 대비</b></p> <p>거주자우선주차제에 즈음하여 아파트 이하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주차면수가 나름대로 양호한 편이나 업무시설 주차로 큰 혼란이 예상되며, 단독주택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면수가 절대부족한 형편임으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원이 폭주하지 않도록 만전을 요함.</p> <p style="text-align: right;">〈 천승수 위원 〉</p>
주차관리과	건의	<p><b>o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전담팀을 구성, 징수에 철저</b></p> <p>주차위반과태료 단속건수가 연간 230,000건에 이월 미수액 건수 753,105건등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
주차관리과 도시정비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특별회계 사용상의 문제점</b></p> <p>주차장특별회계는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p> <p>새우촌공원종합시설 건립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p> <p>노외주차장건립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 제4항에 주차장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p> <p>새우촌공원종합시설은 대지 13,877㎡ 건축 총면적 4,900㎡로 주차장법에 위배되며, 부득히 특별회계를 새우촌종합시설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현행규정을 개정후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 김열호 위원 〉</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요구	<p><b>o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 철저</b></p> <p>관내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는 거주자 선주차실시에 장·단점으로 민원발생이 과중되고 있음은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계획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 행정은 기본적인 서비스 관리가 요망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선안 4가지를 지적하는 바,</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거주자 주차면 도색을 1년 상·후반기 2회 실시 필요</li><li>2) 현재 주차선 면안에 유료라고 표시한 것을 착각하여 유료 주차하는 곳으로 알고, 주차하여 시비가 자주 발생됨.</li><li>3) 구청사 내 주차관리과는 주·야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하였는데, 민원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수요자 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주간에만 수신자부담 전화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li></ol> <p>위 열거한 4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 원활한 주차관리가 되도록 시정할 것.</p> <p style="text-align: right;">〈 김옥자 위원 〉</p>

[ 보건소 ]

소관부서	구분	처리 의견 (지적사항)
보건소	건의의	<p><b>o 명절 때 주민이 약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b>                      명절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번제로 운영하여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여 줄 것을 요망.                      &lt; 박찬선 위원 &gt;</p>
	건의의	<p><b>o 약국, 의료기관 서초구민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b>                      우리관내 의료기관 762곳, 의약업소 609곳, 지도점검 51% 점검완료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인지? 지도점검 팀은 몇 명이 어느 분야 점검하는지?                      &lt; 김용재 위원 &gt;</p>
보건소	건의의	<p><b>1. 조직관리철저</b>                      현재 보건소는 3개과 9개팀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데 2개과장이 공석으로 있어 보건행정업무와 의약업무에 대한 행정이 소홀할 우려가 있음.                      조속히 2개과장의 보직을 충원하여 보건업무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b>2. 월드컵대비 청소차량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할 것.</b>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은 우리구 전지역을 곳곳 누비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여름철 발생하는 악취제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과 외국방문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강구할 것.                      &lt; 김열호 위원 &gt;</p>

소관부서	구 분	처 리 의 건 (지적사항)
보 건 소	건 의	<p>o <b>에이즈감염자 철저한 관리와 껌질방, 안마소 등 위생업소 종업원 건강검진 관리 철저</b></p> <p>에이즈감염자가 계속 증가되고 현재는 유아까지도 감염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서초구 보건소 에이즈관리자는 20명으로 몇년간 변함이 없는데 지속적인 관리와 요즈음 껌질방에도 지압, 안마등을 많이하고 있는데 위생상태나 종업원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 장영화 위원 〉</p>